

#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- 제68 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7. 10. 2.  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관리부서는 DB구축시 총괄부서와 협의 중복투자방지 신설  
(안 제15조제3항)
- 나. 사업 시행시 준공도 작성비용을 설계에 반영(안 제16조제1항제1호)
- 다. 준공계 제출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준공도 제출(안 제16조제1항제3호)
- 라.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 사업시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 후 총괄 부서에 제출(안 제16조제1항제4호)
- 마. 자체 갱신 능력초과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가능 신설(안 제16조제3항)
- 바. 총괄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자료제출요구 가능 신설(안 제16조의2)
- 사. 관리부서는 지형지물의 변경유발 공사시 도시기준점 활용 신설  
(안 제16조의3 제1항)
- 아. 총괄부서의 도시기준점 유지관리 의무 신설(안 제16조의3제2호)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( 2007. 8. 9. ~ 2007. 8. 31 )

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##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중 “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”을 “ 「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」 ”로 한다.

제14조중 “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”를 「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 로 한다.

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관리부서에서는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중 “사업 시행 전에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” 를 “사업 시행시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한 준공도 작성비용을 설계에 반영” 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중 “사업 완료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,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통보” 를 “사업 완료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과 자료의 갱신을 위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” 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4호중 “지적법”을 “ 「지적법」 ”으로 하고 “지리정보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 완료시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.” 를 “수치지형도 제작 및 수정 작업(성과 심사필)을 완료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” 로 한다.

제16조제2항중 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” 를 “준공도 제출” 로 한다.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·탐사, 측량 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조의2(자료의 제출 요구)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조의3(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) ①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지형, 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지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총괄부서의 장은 도시기준점이 훼손·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1항중 “사천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”을 “「사천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」”으로 한다.

“별표 1” 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 금액란중 “측량법”을 “「측량법」”으로 한다.

“별표 2”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란중 “특정연구기관육성법”을 “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”으로 한다.

“별지 서식” 지리정보제공 신청서란중 “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”를 “「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」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명: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 에관한조례	제명: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 용 등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----- -----국가지리정보 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----- ----- -----.	제1조(목적) ----- -----「국가지리정보 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」----- ----- -----.
제14조(수당)----- -----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----- ----- -----.	제14조(수당)----- -----「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」----- ----- -----.
제15조(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<신설>	제15조(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관리부서에서는 새로운 지리정보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 를 제작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여야 한다.
16조(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) ① (생략) 1. 사업 시행 전에 시행계획에 대한총 괄 부서의 장과 협의  2. (생략) 3. 사업 완료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 성 검증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총괄 부서의 장에게 결과통보	제16조(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시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 관 리를 위한 준공도 작성비용을 설계 에 반영 2. (현행과 같음) 3 ----- - 과 자료의 갱신을 위한 도형 및 속성 자료를 이기한 준공도를 작

<p>4. <u>지적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</u>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<u>지리정보자료도</u>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②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<u>점검계획</u>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성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</p> <p>4. 「지적법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수치지형도 제작 및 수정 작업(성과 심사필)을 완료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</u></p>
<p>제16조의2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②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준공도</u></p> <p>제출 -----.</p>
<p>제16조의3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③ <u>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 할 경우에는 조사·탐사, 측량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6조의2 (자료의 제출요구)</p> <p><u>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제16조의3(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) ①</p>
<p>제19조(지리정보 제공) ①-----</p> <p>-----</p>	<p>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지형, 지물의 변경</p>



# 관 계 법 령

## 【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】

제15조 (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)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수집·생산하는 지리정보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③관리기관의 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리정보의 열람·복제 등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중복투자의 방지) ①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
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내용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【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】

제16조 (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)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부문에서 생산·관리하는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관리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